

#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12.26]  
( 제정) 2023.12.26 조례 제2034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문화예술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940-8522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거리공연"이란 도로, 광장, 공원,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, 무용, 마술, 전시,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.
2. "거리공연가"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 등을 말한다.
3. "재능나눔"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,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4. "상설화"란 거리공연을 장르별, 요일별, 장소별,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①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거리공연가의 책무)**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 도로, 광장,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
2.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자원 확보방안
3. 거리공연가 육성·창작 지원
4.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한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
5.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
6.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
7.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, 지역 상인회, 거리공연가,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.

**제7조(거리공연 관리)**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거리공연 장소
2.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
3.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8조(지원)**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거리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
2.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
3.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
4.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**제9조(사업)** 시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구축 사업
2. 그 밖에 시장이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10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1조(안전 및 질서유지)**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며,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안하거나,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2조(업무의 위탁)** 시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공연 운영 및 관리 활성화에 전문성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3조(포상)**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, 법인·단체에게 「파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부칙(2023.12.26. 조례 제2034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